의무장교(2023년 편입대상) 지원 절차 안내

1 개 요

□ 의무장교(의무분야 현역장교)

❖ 의료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편입 절차가 개선*됨에 따라,

❖ 선(先) 의무장교 지원 후 국방부 전산 추첨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도록 제도 운영(시행)

※ 의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

* '21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지원할 수 없도록 편입절차 개선

□ 관련 법령

❍ 병역법 제58조제1항, 시행령 제118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 등의 지원)

❍ 병역법 제34조제1항, 시행령 제69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 제2항

□ 주요 일정

지원서 제출	▶	지원서 송부 (10.31.까지)	▶	신원조회 (군사안보 지원사령부)	▶	입영대상 확정·통보(2.10.까지)	▶	역종분류 (2월하순)	▶	입영 (3월)
<본인➡ 학교의장>		<학교의 장➡ 병무청장>		30일 소요		<병무청장➡ 국방부장관>		<국방부> * 의무장교 선발		<의무장교, 공보의>

*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

❍ 의·치·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는 국시원(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)에 조회·확인

❍ 국방부 전산 추첨 과정에서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이 의·치·한의과 구분 공보의 필요(소요)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*에 따라 공보의 선발(병무청 산업지원과)

* 「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」 제4조(편입순위) : ①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(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) ②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③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④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다만, 성범죄전력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.

□ 지원 자격

❍ 현역병입영대상자(신체등급 1~3급) 중 의·치·한의사 면허취득자(취득예정자 포함)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△ 의·치·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(졸업예정자 포함)

△ 의·치·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(졸업예정자 포함)

△ 의·치·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

△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(의무사관후보생*은 지원 비대상)

* 의무사관후보생이란 의무장교 획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(전공의:인턴 등)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전산 추첨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 입영

❍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, 다만 복수국적자<임기제공무원(공중보건의사) 임용 가능)는 지원 가능

* 장교 임용결격 : 금고 이상의 형, 파산선고자, 복수국적자 등

□ 지원 방법

❍ 재학생 : 지원자 → 학교의 장 → 병무청장

❍ 졸업생 : 지원자 → 병무청장

2 지원서 제출 및 처리

재 학 생

* 학교(의과·치과·한의과대학, 전문 또는 일반대학원)에 소속된 사람

□ 지원자(병역의무자) ⇒ 학교의 장에게 제출

○ 제출서류

△ 의무장교 지원서, 신원진술서(A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,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용정보조회서

* 기본증명서 :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
*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

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
※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누리집(병무뉴스 → 공지사항) 게시

○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

△ 의무장교 지원서

- 지원분야 의무에 체크하고 의과·치과·한의과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, 서명 날인

△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

-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반드시 성명 기재, 서명날인

※ 지원서, 신원진술서(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),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

□ 학교의 장 ⇒ 병무청누리집 지원 접수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

① 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지원 접수

△ **접수기간 : '22. 10. 11.(화) ~ 10. 31.(월)까지**

△ 지원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 재확인

△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

-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(접수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)

* 접수기간 이전에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'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(변경·취소)신청서' 접수, 유관기관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접수 가능

☞ 접수 경로

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⇒ 병무민원포탈 ⇒ 후보생·공보의 등 ⇒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

② 문서 제출(전자문서)

△ 제출 기간 : '22. 11. 4.(금)까지

△ 붙임 서류 :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(excel)

※ 10.31.까지 병무청누리집에 지원 접수된 인원에 한하여 명단 작성하여 문서 제출

③ 지원서류 제출(우편)

△ 제출 기간 : '22. 11. 4.(금)까지

※ 10.31.까지 병무청누리집에 지원 접수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서류 제출

△ 지원자 명단(성명 가나다 - 주민번호 순) 순으로 개인별 '클립' 편철

※ 지원서류 개인별 순서

① 의무장교 지원서, ② 신원진술서(A)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 ④ 기본증명서(상세)

⑤ 신용정보조회서

*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

△ 우편 주소 【우편번호 35208】

-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장교 접수 담당

④ **지원 취소 : '23. 2. 10.(금)까지**

△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'23년 전공의(인턴) 채용되어 의무사관 후보생에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직권 취소 처리함.

☞ 접수 취소 경로

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⇒ 병무민원포탈 ⇒ 후보생·공보의 등 ⇒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

졸 업 생

* 학교(의과·치과·한의과대학, 전문 또는 일반대학원)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

□ 지원자 ⇒ 병무청누리집 지원 접수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

① 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지원 접수

△ **접수기간 : '22. 10. 11.(화) ~ 10. 31.(월)까지**

☞ 접수 경로

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⇒ 병무민원포탈 ⇒ 후보생·공보의 등 ⇒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

② 지원서류 제출(우편)

△ 제출기간 : '22. 11. 4.(금)까지

※ 10.31.까지 병무청누리집에 지원 접수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서류 제출

△ 제출서류

- 의무장교 지원서, 신원진술서(A),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(A),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용정보조회서

* 기본증명서 :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
*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
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
※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누리집(병무뉴스 → 공지사항) 게시

△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

- 의무장교 지원서 : 지원분야 의무에 체크하고 의과・치과・한의과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, 서명 날인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(A) :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반드시 성명 기재, 서명날인

※ 지원서, 신원진술서(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),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

△ 우편 주소 【우편번호 35208】

-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장교 접수 담당

③ **지원 취소 : '23. 2. 10.(금)까지**

△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'23년 전공의(인턴)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에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직권 취소 처리함.

☞ 접수 취소 경로

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⇒ 병무민원포탈 ⇒ 후보생・공보의 등 ⇒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

(별 지)

「2023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」 관련 입영 등 유의사항

1. 입영대상 확정·통보 : 병무청 → 국방부, '23. 2. 10.(금)까지

○ 의·치·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에 확인하여 자격취득자에 대해 명단 통보

국방부 명단통보 제외 대상

① 의·치·한의사 국가시험 결과 자격 미취득자(불합격자, 미응시자 등)

② '23년 전공의(인턴 등) 채용되어 2. 10.까지 의무사관후보생[1]을 지원한 사람

③ 재병역판정검사 등 결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[2]

④ 군인사법 제10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- 다만, 복수국적자는 임기제공무원(공중보건의사) 임용 가능함에 따라 국방부 전산 추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보의 선발 부서로 통보

⑤ '23년 카투사, 의무병 등 현역병 입영 희망 및 본인이 의무장교 입영 포기를 원하여 의무장교 지원서를 2. 10.까지 취소한 사람**(2.11.이후 취소 불가)**

* (경로) 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⇒ 병무민원포탈 ⇒ 후보생·공보의 등 ⇒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

2. 군별·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 : 국방부, '23. 2월 하순

○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 지원자로 분류·결정, 분류결과는 개인 문자발송

---

1) 수련병원에서 수련(전공의:인턴 등) 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

2)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2. 10.까지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가능

3. 공중보건의사 선발 : 병무청 산업지원과

○ 국방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이 의과·치과·한의과 구분 ’23년 공보의 필요(소요)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*대로 선발

* 「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」 제4조(편입순위): ①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(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) ②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③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④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다만, 성범죄전력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.

4. 입영일(예정)/교육훈련기간

○ 의무장교 입영/교육훈련기간 : ’23. 3월 중순/ 6주(학생군사학교 4주, 국군의무학교 2주)

○ 공중보건의사 입영/교육훈련기간 : ’23. 3월 중순/ 3주(육군훈련소)